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성호** · 박성욱*** · 나형중****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소상공인의 범위와 정의를 규정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조세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한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영세하여 외부의 환경과 경제 여건에 따라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비해 시장에서 경쟁력과 자생력을 갖추기 쉽지 않다. 따라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초기의 자금지원도 우선 도움이 되지만 직접적인 조세지원 또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로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현행 소상공인 세제지원제도의 문제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통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 정의를 구체적으로 세법에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조정하여 실질적인 세부담에 맞게 제도를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 업종의 예외규정을 신설하여야 한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재지역에 대한 차등을 받지않고, 감면 대상 업종 구분을 삭제하여야한다.

〈주제어〉 소상공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조세지원제도

* 본 논문은 제1저자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을 대폭 수정 및 보완한 것입니다.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세무사, shanxs@daum.net, 주저자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회계·세무학과 교수, sopark@khu.ac.kr, 교신저자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 연구교수, fresh_na_77@hanmail.net, 공동저자

논문접수일 2019년 7월 19일

1차수정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20년 2월 14일

I. 서 론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기준과 범위를 규정하고, 소상공인을 위한 조세지원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한 후 이에 대한 세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소상공인에 대해 살펴보면 소기업 중에서도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으로 업종에 따라 5명인 사업자를 의미한다. 소상공인의 특성 상 주로 도매업, 소매업, 음식점업, 서비스업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업종은 외부 환경과 경제 상황에 따라 기업의 존립과 성장이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규모가 더 큰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에 비해 소상공인의 온전한 경영으로 경쟁력 및 자생력을 높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소상공인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증가시켜 소비 활성화에 이바지 하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에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 이러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창업 초기의 자금지원도 도움이 되지만 경영활동 과정에서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조세지원도 필요하다라고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IMF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으로 인한 평생직장에 대한 개념과 의미가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 과정 속에서 청년취업자나 구직난에 있는 세대들은 진입장벽이 쉬운 소상공인으로서 소규모 창업을 많이 하게 되었다. 즉, 소상공인으로서 창업을 하는 것이 경제기반 마련을 위한 최후의 수단인 것이다(정종희, 2015). 특히 소상공인 창업은 일정한 형태의 고용 기회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미숙련공, 저학력 노동자에게도 일자리 기회가 생성되었으며,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내·외 경제현상이 악화되었을 경우 소상공인은 스스로 경쟁 우위능력을 갖추기 힘들고, 경쟁력 하락으로 쉽게 폐업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절실하다(최은화, 2018).

소상공인의 수익성은 국내 실물경제 순환에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소상공인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0년 사이에 소상공인의 수익성은 계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순태, 2013). 이것은 준비되지 않은 소상공인의 업종 과잉 진입, 직장인 과다 퇴출 등으로 인하여 소상공인이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내실 있는 성장은 이루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최은화, 2018).

한편,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와 사업체 종류는 다양하여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자체가 각 소상공인을 만족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실제로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등 특정 분야의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역자체단체 등의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연속성, 체계성, 전문성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는데, 실제로는 단순하고 획일적 지원체계로 인하여 연속성과 효율성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소상공인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김순태, 2013).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제시하였고 선행연구와의 차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과 이를 고객으로 삼는 세무사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현실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다양한 해외사례들을 조사하여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적합한 소상공인 지원방안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본 논문은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Ⅱ장에서는 소상공인의 개념 및 소상공인이 직면해 있는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적용 받는 현행 세법 규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Ⅳ장에서는 외국 사례를 통해 소상공인 지원 체계를 살펴 보았으며, 소상공인에게 주는 시사점을 파악하였다. 제Ⅴ장에서는 현행 세법규정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제Ⅵ장에서는 세법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고, 제Ⅶ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였다.

Ⅱ. 소상공인의 개념 및 현황

현재 우리나라의 소상공인에 대한 정의는 1966년에 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소기업에 대한 기준을 구분하는데에서 시작되었다. 그 후 1999년에 소상공인지원센터를 개설하면서 소상공인을 개별화된 별도의 분야로 발전시키게 되었다. 즉, 소상공인에 대한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소기업의 개념에서 세분화 된 것이다. 소상공인은 소기업 중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소기업으로 이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근거하고 있다(박민정, 2018). 소상공인의 정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기업 중에서 건설업, 운수업, 광업,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의 기업체이며,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체이다. 다음의 <표 1>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사용하는 기업구분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비교 구분 기준이 나타나있다.

최근 소상공인은 소득률 하락, 이익률 부진, 폐업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정부의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상공인은 최저임금 관련 인건비 상승, 경기하락으로 인한 매출감소, 업종 간 과다경쟁, 금융권의 금융 소외현상 등으로 인해 폐업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최은화, 2018).

사용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증가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에는 4.1%, 2015년에는 2.5%로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 대비 2015년에는 전체적으로 1.6%하락하였다.¹⁾ 5인 미만의 영세사업장의 사업비용은 2017년 이전 5년간 연평균비율은 7.2% 증가하여 같은 기간 내 연평균 매출 증가율인 5.8%를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표 1〉 기업 구분 기준

업 종	기업 구분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제 조 업	10명 미만	10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광 업			
건 설 업			
운 수 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농업, 임업 및 어업	5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과 여가와 관련된 사업	5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하수처리와 폐기물 처리 및 환경 복원업			
교육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서비스업	5명 미만	5명 이상 ~50명 미만	50명 이상
부동산업 및 임대업			

출처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소상공인의 경우 각종 수수료, 세금, 임대료, 채무, 채권 등 전반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수수료 관련 부문에서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가 증가하였고 특히 소액 카드결제가 증가하여 그 부담이 증가되었다. 임차 소상공인은 2016년 기준, 63%에 해당하여 소상공인의 절반이상이 임대료에 의해 영향을 받는 상황이기에 안정적인 사업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서울지역의 임대료를 조사해 보면 2016년 1/4분기 2.9(만원/㎡)에서 2/4분기 3.1(만원/㎡), 3/4분기 3.4(만원/㎡), 4/4분기에는 3.4(만원/㎡)으로 조사되었다.³⁾ 또한 소상공인의 부채 수준은 점진적으로 높아지며 상환능력 할 수 있는 능력도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가구당 평균 부채

3)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비용은 자영업자의 경우, 2015년을 기준으로 9,443만원에서 2016년에는 9,812만원으로 약 4.8% 가량 상승하였다. 이와같은 데이터를 볼 때 부채비용 증가, 임대료 상승 및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표 2>는 최저임금 미만 종사자의 규모별 비율과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종사자의 비율을 나타낸 표이다.

<표 2> 최저임금 미만 종사자의 규모별 비율 및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 종사자의 비율

종사자 수	1-4인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비율	44.6%	23.6%	19.1%	8.5%	2.9%	1.3%

업종	제조	도소매	음식숙박	부동산임대	사업지원	교육서비스	그 외
비율	8.7%	15.7%	19.7%	3.3%	9.9%	4.8%	37.9%

출처 : 통계청(www.kostat.go.kr), 경제활동 인구총조사

현재, 소상공인은 전체 사업체 중 가장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소상공인 사업체 종사자의 비율은 전체 종사자의 36%에 이른다. 전체 국민의 직업성향을 분석해 볼 때 소상공인은 국내경제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숫자는 전체 사업체의 85%에 해당하고, 종사자 수는 전체 약 1,700만 명 중 약 620만 명으로 약36%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에서는 우리나라의 연도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제시되어있다.

<표 3> 연도별 소상공인의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단위 : 천개, 천명, %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사업체수 (개)	전체	3,545	3,605	3,676
	소상공인	3,063	3,084	3,137
	비중 %	86.4	85.6	85.3
종사자수 (명)	전체	15,962	16,775	17,051
	소상공인	6,046	6,066	6,202
	비중 %	37.9	36.2	36.4

출처 : 통계청(www.kostat.go.kr)

Ⅲ. 현행 세법상 소상공인 지원규정

1. 부가가치세법

가. 간이과세 제도

부가가치세법 제 61조의 간이과세 제도는 1996년에 도입되었고,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에게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본 제도는 기장 능력, 세법에 대한 지식, 과세제도 활용 등의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제도이다.

2011년 국세청 통계에 따른 사업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사업자는 4,797,795명이고 2014년에는 4,969,779명, 2016년 5,330,690명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2011년에 비해 2016년에는 간이과세 사업자는 약 11만명이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 비율은 2011년에는 32.9%, 2012년에는 31.2%, 2013년에는 31.7%, 2014년에는 29.7%, 2015년에는 28.4%, 2016년에는 27.2%로 매년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통해 간이과세 기준액이 현실성 있게 재조정 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4>는 연도별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현황에 대한 자료를, <표 5>는 연도별 간이과세 사업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시한다.

<표 4> 연도별 간이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현황

단위 : 명, 백만 원

연도	인원 신고	세분 매출			영세율매출		면세분 매출		가산 세액	공제 세액	세액 차감 납부
		인원	과세표준	세액	인원	과세표준	인원	금액수입			
2011	1,762,349	1,762,094	28,830,812	778,133	255	8,869	13,678	975,173	628	405,438	373,327
2012	1,680,656	1,680,400	27,929,582	759,477	256	11,572	13,677	694,210	661	398,421	361,716
2013	1,779,011	1,778,761	26,958,390	480,937	250	11,198	16,063	723,899	412	204,962	276,403
2014	1,672,075	1,671,880	30,637,807	523,376	195	11,100	15,418	959,768	150	261,771	261,755
2015	1,660,162	1,659,847	30,900,007	551,222	315	13,083	17,717	855,424	531	264,295	287,458
2016	1,652,359	1,652,045	31,402,241	554,288	314	11,113	18,003	959,775	507	282,430	272,365

출처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2018)

<표 5> 연도별 간이과세 사업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합계(명)	4,797,795	4,793,431	4,988,210	4,969,779	5,132,194	5,330,690
일반사업자	3,035,446	3,112,775	3,209,199	3,297,704	3,472,032	3,678,331
간이사업자	1,762,349	1,680,656	1,779,011	1,672,075	1,660,162	1,652,359
납부의무 면제자	1,369,592	1,297,303	1,344,519	1,261,085	1,164,141	1,208,448
납부의무 면제자 비중	77.7%	77.2%	75.6%	75.4%	70.1%	73.1%

출처 : 통계청(www.kostat.go.kr)

나.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한 납부의무 면제

부가가치세법에 명시된 제69조에 따르면,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액의 합계가 3천만원 미만이면 납부에 대한 의무를 면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표 6>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 납부세액을 비교하였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3천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의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받으면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책임이 없다. 이에 비해 일반과세자일 경우 870,000원의 납부세액이 발생한다. 일반과세자일 경우 매입액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을 할당한 사례인데, 실제로 부동산 임대업자의 부가가치율 자체는 더 높기 때문에 납부세액의 차이는 더 크다. 부동산 임대사업의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은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신고 되는 부가가치율 90%를 할당 적용할 경우, 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의 매출액이 2천9백만원 일 때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610,000원으로 나타난다.

<표 6>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구 분	일반과세	간이과세
매출액	29,000,000	29,000,000
매입액	20,300,000	20,300,000
과세표준	8,700,000	8,700,000
납부세액	870,000	0

2.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70조와 제160조에 의하면 사업자는 본인의 소득을 근거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신고 및 납부 하여야 한다. 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보관하여 이

를 토대로 산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부는 사업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로 기장 의무가 분류되어진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득 금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준비해 놓고 해당 사업에 대한 모든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진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의 경우 ‘간편장부대상자’라 칭하고,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여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없는 사업자가 있는데 전문직사업자가 이에 해당된다. <표 7>에서는 업종별로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의 기준금액을 제시하고 있다.

〈표 7〉 간편장부 작성 대상자 기준금액

구 분	기준금액
가. 농업, 임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광업, 그 밖의 ‘나’항과 ‘다’항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3억원 미만
나. 제조업, 음식업, 숙박, 가스, 증기, 전기,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과 영상, 방송통신과 정보서비스사업, 금융·보험업	1억 5천만원 미만
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협회 및 단체, 예술·스포츠·여가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 내 고용활동	7천 5백만원 미만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3. 조세특례제한법

가. 노란우산공제 한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86의 3조 1항의 경우 영세 소상공인이 적용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소득공제제도이다. 특별한 퇴직금이 없는 사업자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보조하는 사회안전망 제도로써 현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소상공인이 가입대상자가 된다.

본 제도는 소득금액에 따라 소득공제 금액이 차등적용 되는데, <표 8>을 살펴보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표 8〉 노란우산공제 제도의 소득구간별 절세효과

구 분	사업(근로)소득	최대 공제한도	예상 세율	최대 절세효과
개인 및 법인	4천만원 이하	5,000,000	6.6~16.5	330,000~ 825,000
개인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3,000,000	16.5~38.5	495,000~1,115,000
법인	4천만원 초과 5,675만원 이하	3,000,000	16.5~38.5	495,000~1,115,000
개인	1억원 초과	2,000,000	38.5~46.2	770,000~ 924,000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나.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986년 05월에 제정되었고, 창업 초기 세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1986년 12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를 도입하였다.⁴⁾ <표 9>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표 9〉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의 구분

구 분		감면비율
청년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100% (5년) 최저한세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중소기업	50% (5년)
일반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50% (5년)
	창업벤처중소기업	50% (5년)
	에너지 신기술중소기업	50% (5년)
생계형 창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100% (5년) 최저한세배제
중소기업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	100% (5년)

출처 : 법제처(www.moleg.go.kr)

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1992년 당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여 임시특별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후 개정을 통해 업종을 확대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로 운영되고 있다.⁵⁾ <표 10>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세지원을 업종과 소기업 및 중기업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4) 국세청(www.nts.go.kr)

5) 국세청(www.nts.go.kr)

〈표 10〉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에 대한 조세지원의 구분

구 분		제조업·광업·건설업 등	도·소매, 의료업 등
소기업	수도권	20%	10%
	수도권 외의 지역	30%	
중기업	수도권	지식기반산업 10%	—
	수도권 외의 지역	15%	5%

출처 : 법제처(2019)

IV. 해외 주요국의 소상공인 지원 규정

1. 미국

미국의 간이과세제도에 따르면 조세지원제도의 경우 시장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도움을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정부에 의한 직접적 세금 감면보다는 자본 유치를 통한 지원 및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체계는 대체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 없이 모든 기업에게 차별 없이 적용되고 있으나 창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소기업을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대하고 있다(홍재필, 2016). 또한 중소기업 투자자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하여 민간자본이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에게 투자될 수 있도록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간이과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에 있어서 과세매출액에 따라 공제하는 소비세액으로 산출한다. 구체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한하여 과세매출액에 따른 소비세액에 간주 매입를 곱한 금액으로 처리한다. 즉, 매입 소비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매출에 따른 소비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실제 과세 매입 등에 따른 소비세액을 산출할 필요없이 과세총수입액만으로 납부소비세액을 산출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우리나라와 생성 방법만 다를 뿐 기본적 이론은 같다(조은덕, 2006). 다음의 <표 11> 일본의 사업별 간주 매입를 업종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표 11〉 일본의 사업별 간주 매입률

업 종		간주 매입률
제 1 종	도매업	90%
제 2 종	소매업	80%
제 3 종	제조업 외	70%
제 4 종	음식업 외	60%
제 5 종	서비스업 외	50%

출처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한편 최근 일본의 소상공인 관련 공제 감면제도의 경우,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설비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설비투자에 대한 특별 상각 비율 30%와 기타 세액공제 7%를 유동성 있게 적용하고 있다(홍재필, 2016).

3. 영국

영국의 부가가치세법 중에서 간이과세제도에 의하면 영세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등록을 면제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⁶⁾ 우리나라의 간이과세제도와 유사한 부가가치세 단일세율제도가 있다. 본 제도는 과세공급대가에 일정한 비율로 곱하여 부가가치세를 간단하게 산출하는 특례제도이다. 이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 등록사업자이며, 다음 연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과세 공급가액이 £150,000 이하여야 한다. 즉, 단일세율 적용 시 납부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4% 부터 14.5% 까지로 폭넓고, 업종은 54개로 자세히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그 밖에 일년에 한번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도록 하는 연차회계제도가 있다. 일반적으로는 일년에 네번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 다음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공급 가액이 £1,350,000 이하로 예상되는 사업자는 연차회계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송민경, 2018).

4. 독일

독일의 간이과세제도는 소상공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록 및 신고·납부의무를 면제하는 소액부 징수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⁷⁾ 이는 직전 사업연도의 공급대가가 €17,500를 상회하지 않고

6)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7)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당해 사업연도에 €50,000를 상회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에 대하여는 사업자 등록 및 거래징수의무와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독일의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역시 매출액 규모가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농업 및 임업에 해당하는 경우 표준율을 사용하여 공제할 매입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단순히 산출하는 표준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⁸⁾ 표준율 제도를 적용할 경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매출액에 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표준율을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매입세액 외의 추가적인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매입세액공제를 위한 별도의 증빙을 갖출 필요도 없다. 표준율에 대해서는 4개의 대수공업, 소매업, 기타영업, 프리랜서로 각각 구분하고 있으며, 상사업종별 총 54개로 나뉘지며, 업종별로 1.6% 부터 12.5%까지의 세부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표준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납부세액은 표준율을 적용하지 않았 경우에 산출된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도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5. 시사점

다양한 외국 사례를 통해, 간이과세제도 및 부가가치세를 간편하게 산출 하는 국가는 일본, 영국, 독일 등이 있다. 독일은 간편납부에 따른 세액과 부가가치세 과세제도에 따른 세액 간에 별다른 차이가 없어야하고, 영국의 경우도 전년도 「부가가치세법」 위반 또는 부가가치세 탈세로 인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대부분의 부가가치세를 운영하는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의 등록 및 납부에 대한 면제, 부가가치세 간편 납세제도, 신고횟수 간소화 등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의 경우, 우리나라는 납부의무만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은 면제하지 않으나 영국 및 독일은 등록의무와 납부의무를 모두 면제하며, 영국, 독일의 등록 및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면제 기준금액인 3,000만원은 낮은 편에 속한다. 간편납세제도를 살펴보면, 영국이나 독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적용 기준금액은 상대적으로 낮은 4,800만원이나, 1인당GDP 대비 비율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136%로 독일의 150%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다만, 각 국가별로 부가가치 간편납세제도 적용시 부가가치율, 부가가치 표준세율, 지하경제 규모 등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편 납세제도 적용시 기준금액의 차이를 단순히 수치적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다. 해외 사례의 경우, 간편 납세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을 높게 정하여 적용 대상의 범위를 넓히되, 보다 세분화된 업종 분류를 근거로 실제와 유사한 수준의 부가가치율을 적용함으로써 세부담 경감효과보다는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간편 납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영국이나 독일 등과 같이 간이과세제도의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세분

8)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화하여 실질 부가가치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V. 현행 소상공인 관련 세제지원의 문제점

1. 소상공인 정의에 의한 분류

국내 세법 상 소상공인만을 위한 특별한 조세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소상공인의 정의가 소기업에 속하면서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에 따라 판단되기 때문이다. 현재 소상공인의 경우 소기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중소기업과 관련된 혜택만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후에는 소기업은 규모기준으로 정의된다. 소기업의 매출액 규모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규모를 훨씬 초과하는 범위이다.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상시근로자수와 매출액 규모를 동시에 비교 판단 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2. 부가가치세법 상 문제점

가. 간이과세제도 기준금액

본 제도는 소규모 사업자의 세무회계업무 부담 경감과 세무행정비용 감소를 위해 마련되었다. 그러나 1999년 이후 단 한번도 개정되지 않은 4,800만원 연매출 기준금액으로 인해, 세부담 경감이라는 간이과세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되었다. 20여년간의 물가, 임대료, 인건비 등의 상당한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금액은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 후 1년이 지나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들은 세금부담, 장부기재, 세금계산서 발행 등 과도한 납세 협력 의무를 책임지기 때문에 사회 전체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나.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 업종

간이과세제도의 경우 간이과세 배제업종이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배제업종으로는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이 있고,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등의 경우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으로서 종목과 지역 기준이 존재하고 그 종목을 그 지역에서 운영할 경우 간이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는 업종과 지역별로 차별하는 제도로써 기준금액 내의 사업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다.

3. 조세특례제한법 상 공제 감면제도

현행 소득세율은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수직적 공평의 논리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이러한 논리에 의하면 혜택적 측면에서도 수직적 공평은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소기업에 포함되어 소기업과 동일한 혜택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보다 훨씬 영세한 소상공인이 동일한 혜택을 받고 경쟁하기는 힘든 것이 현실이다. 영세한 소상공인만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세금을 납부할때 가장 크게 혜택받는 감면제도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인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이다. 총매출액에서 해당 원가를 차감하고, 세무조정 절차를 거쳐 과세표준을 산출하여 산출세액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혜택은 없다. 산출세액이 계산되면 기업 규모에 따른 세액감면이 있는데 이때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중견기업, 중소기업인지 여부에 따라 감면률이 정해지는데 영세한 소상공인도 소기업에 포함되어 중소기업과 같은 세액감면을 받는다. 하지만 감면받는 세액을 전액 공제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대상 세액 감면이기 때문이다. 또한 감면대상 업종이 존재하기 때문에 영세한 소상공인이라 하더라도 감면대상 업종을 경영하지 않는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VI. 소상공인을 위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1. 소상공인 정의의 세분화

전술하였듯이,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세한 소상공인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그들에게 추가적인 조세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세하다는 의미의 기준을 고용인원과 금액으로 설정하였다. 상시고용인 1명 이하, 매출액 7천5백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정의하고, 매출액은 과세기간동안의 매출액을 의미하고 기중에 사업을 개시한 경우 연매출액으로 환산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시행령에서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한 기준이 매출액 7천5백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신설하여 소상공인을 지원하여야 한다.

2.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하고 실질 부가가치 세율과 비슷한 수준으

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영국은 단일세율 적용시 납부세액을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은 4%부터 14.5%까지로 다양하고, 업종을 54개로 세분화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세율을 정하였다. 한편, 독일은 표준율을 업종별로 총 54개로 세분화 하였고, 1.6%부터 12.5%까지의 다양한 요율을 배분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해외의 사례처럼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하여 실질 부가가치 세율과 유사한 세부담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 업종의 예외규정 신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 개정을 통해 영세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제도 적용배제업종의 예외를 둘 필요성을 제시한다. 세법지식이나 산출능력이 있다고 하여도 매출액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경우 배제업종을 적용 받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지적 능력의 보유형태가 경제적 이익 창출을 보장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연간 매출액이 간이과세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 업종에 차별 없이 간이과세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

4.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르면, 창업 시 다양한 혜택을 받고 있지만 연령, 지역, 수입금액에 따른 차등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는 청년이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 했을 경우와 수입금액 4천8백만원 이하인 중소기업에게만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청년의 나이에 대한 기준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이다. 그 외에 창업하는 소상공인은 일반창업과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의 혜택만 적용받게 된다. 예를 들어 소상공인이 매출액 1억 원을 달성하였을 경우, 생계형 창업 중소기업 세제 혜택은 받지 못하고 일반창업에 대한 세액감면만 적용 받을 수 있다. 이때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50% 감면 혜택을 누리는데 이 또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인 세액감면인 것이다.

아래의 <표 12>를 살펴보면 매출액 7천5백만원을 달성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감면세액이 작아 최저한세를 적용 받아도 감면 배제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업종별 소득률이 가장 높은 서비스를 경영하는 소상공인의 사례를 가정하였을 경우, 감면 배제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최저한세 적용을 받아도 무관하다고 판단된다.

〈표 12〉 청년 창업과 그 외의 경우 세액감면과 최저한세의 비교
(기본공제대상자 본인포함 총 2명, 서비스업 소득률 22.4%의 경우)

단위 : ₩

구 분	청년 창업	그 외
매출액	75,000,000	75,000,000
대응비용	58,200,000	58,200,000
당기순이익	16,800,000	16,800,000
과세표준	13,800,000	13,800,000
산출세액	990,000	990,000
세액감면	990,000	495,000
차감세액	0	495,000
최저한세	0	346,500
감면배제액		0

5. 중소기업 대상 특별세액감면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의하면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기업에 포함되어 업종과 소재지역에 따라 10% 부터 30% 까지의 세액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 도·소매업 및 제조업은 감면대상 업종이지만 상대적으로 대응원가가 적은 서비스업은 감면대상 업종이 아니기에 납부하는 세금이 더 많게 된다. 우선 업종 종류별 소득률 범위에 따라서 납부할 세액에 대한 차등이 나타나지만, 감면대상 업종의 구분과 소재지역의 구분으로 같은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차별을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단된다. 영세한 소상공인은 소재지역 및 업종구분을 모두 제거하여 20%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아래의 <표 13>은 본 논문의 주장대로 소상공인의 종합소득세 세액감면금액을 산출한 표이다. 기본공제대상자는 본인포함 총2명, 수도권 소재하고, 소득률은 업종별 평균 소득률인 ·소매 8.8%, 제조 14.1%, 서비스 22.4%를 적용하였고, 소득공제액은 본인과 배우자 총 2명을 상정하여 3백만원으로 산출하여 계산하였다. 이와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지만 소재 지역 기준에 의해 감면에 해당하지 못하였던 도·소매업은 43,200원, 감면대상 예외 업종으로 감면을 받지 못하였던 서비스업의 경우 198,000원의 절세효과 받을 수 있게 된다.

〈표 13〉 업종별 세액감면

단위 : ₩

구 분	업 종		
	도·소매	제조	서비스
매출액	75,000,000	75,000,000	75,000,000
대응비용	68,400,000	64,425,000	58,200,000
당기순이익	6,600,000	10,575,000	16,800,000
과세표준	3,600,000	7,575,000	13,800,000
산출세액	216,000	454,500	990,000
세액감면	43,200	90,900	198,000
차감세액	212,800	363,600	792,000

VII.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세법상의 규정들을 세목별로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련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행 세법에서 소상공인만을 위한 조세지원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영세한 소상공인을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기준과 정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영세의 정의를 상시고용인 1명 이하, 매출액 7천5백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정할 것을 제시한다. 둘째, 영국과 독일의 제도와 같이 간이과세제도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보다 세분화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세금 부담과 맞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영세한 소상공인일지라도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불가능한 업종이 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09조를 개정하여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간이과세 적용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넷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 규정을 소상공인의 실정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규정을 개정하여, 영세한 소상공인이 소재지역과 업종의 차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공헌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며 적용받는 세법 규정을 살펴보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조세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주요국의 세제 분석을 통해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간이과세제도를 포함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개선을 제시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그러나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편익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자료 확보와 소상공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더 발전된 개선방안을 도출 할 예정이다.

참고문헌

- 김순태. 2013. “소상공인특성과 정부지원정책 요인이 사업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민정. 2018.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도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민경. 2018. “간이과세제도의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제15권.
- 정종희. 2015. “소상공인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부지원프로그램의 조절효과”. 울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은덕. 200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은화. 2018. “소상공인의 사회적자본이 네트워크, 운영전략 및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재필. 2016.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국세청(www.nts.go.kr)
- 기획재정부(www.moef.go.kr)
- 법제처(www.moleg.go.kr)
-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web/main/index.do>)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emas.or.kr)
- 중소벤처기업부(www.mss.go.kr)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 통계청(www.kostat.go.kr)

Suggestions on Tax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Sung Ho Jang* · Sung Ook Park** · Hyung Jong 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the scope and definition of small business owners, identify the problems of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s, and propose improvement measures for tax support. Small business owners provide community members with work opportunities and contribute to boosting consumption by increasing the average income. Small business owners are relatively more affected by the external environment and economic conditions. National support is needed because it is difficult to be competitive and self-sustaining compared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and large corporations.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is very helpful, but direct tax support is also urgently needed in the course of their management activities. The methodology of this study identifies the tax support system for small business owners by dividing it into the Value Added Tax Act, the Tax Specialty Restriction Act, and the Income Tax Act. Also we add the supporting system outline and investigate the problems of the small business tax support system. Then, we suggest different tax supports related to small business owners. First, the definition of a small merchant should be stipulated in the tax law in a cursory manner. Second, it emphasizes the need to consider practical details by adjusting the value added rate of the simplified taxation system by industry. Third, exceptions should be established for industries subject to simplified taxation under the Value Added Tax Act. Fourth, the Act on Restrictions on Special Taxes should revise the regulations on tax support for start-up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Fifth, Small business owners should be applied a 20 percent reduction rate without a regional classification and an industry classification.

〈Key words〉 Small business owner, Value-added tax simplified taxation, The special tax treatment control law, Tax support system

* Taxation Accountant, Master's degree,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hanxs@daum.net, First Author

** Professor, Department of accounting and taxation, School of Management, Kyung Hee University, sopark@khu.ac.kr, Corresponding Author

*** Research Professor, SKK Business School, Sungkyunkwan University, fresh_na_77@hanmail.net, Co-author